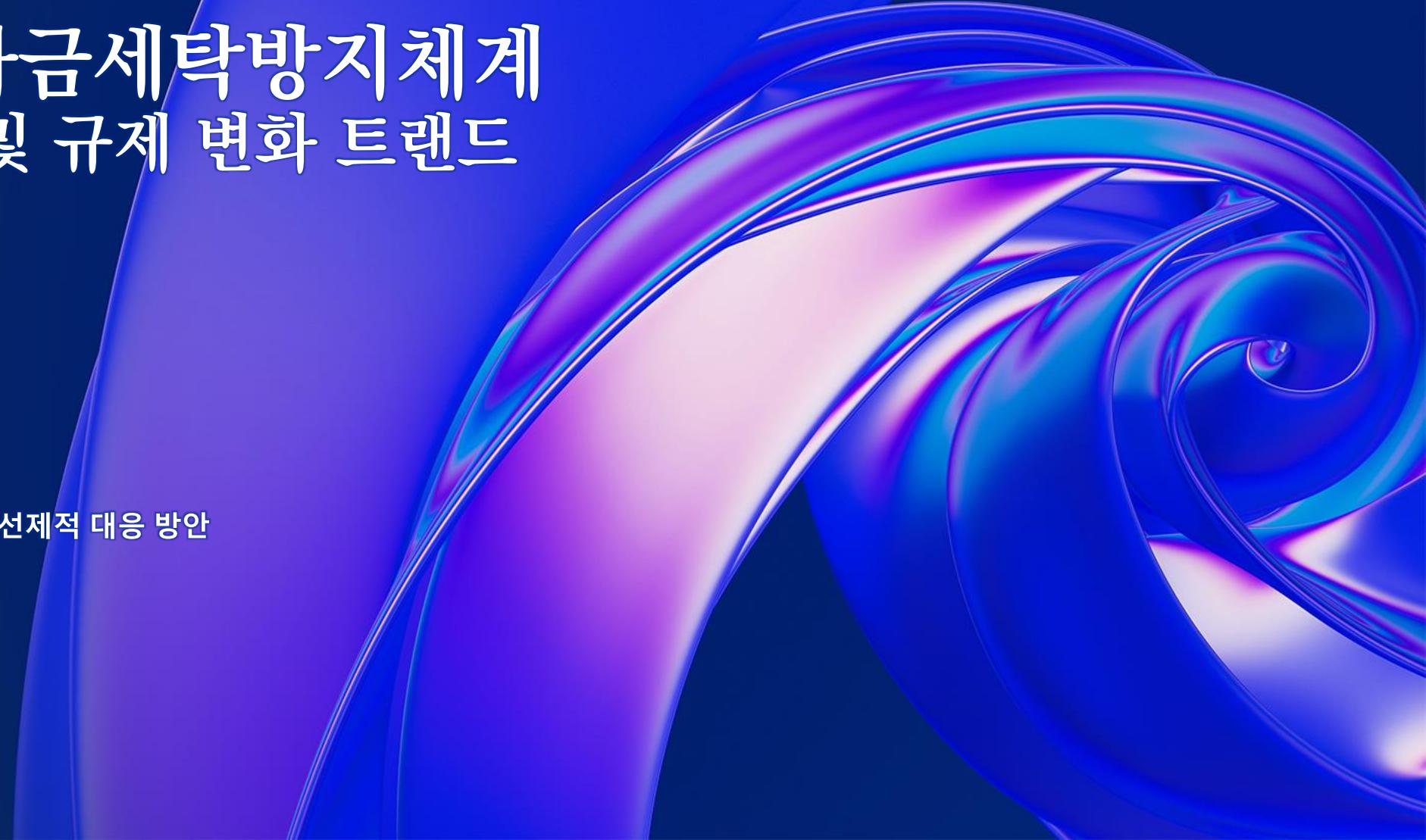


글로벌 자금세탁방지체계 제재 동향 및 규제 변화 트랜드

FATF 5th Round을 향한 선제적 대응 방안

—
10 July 2024



1.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감독 검사 제재 현황

고객확인의무 Know Your Customers

대리인에 대한 KYC 이행 미비, 신원 확인 및 검증 절차 증빙 불합치, 형식적 고객확인의무 이행...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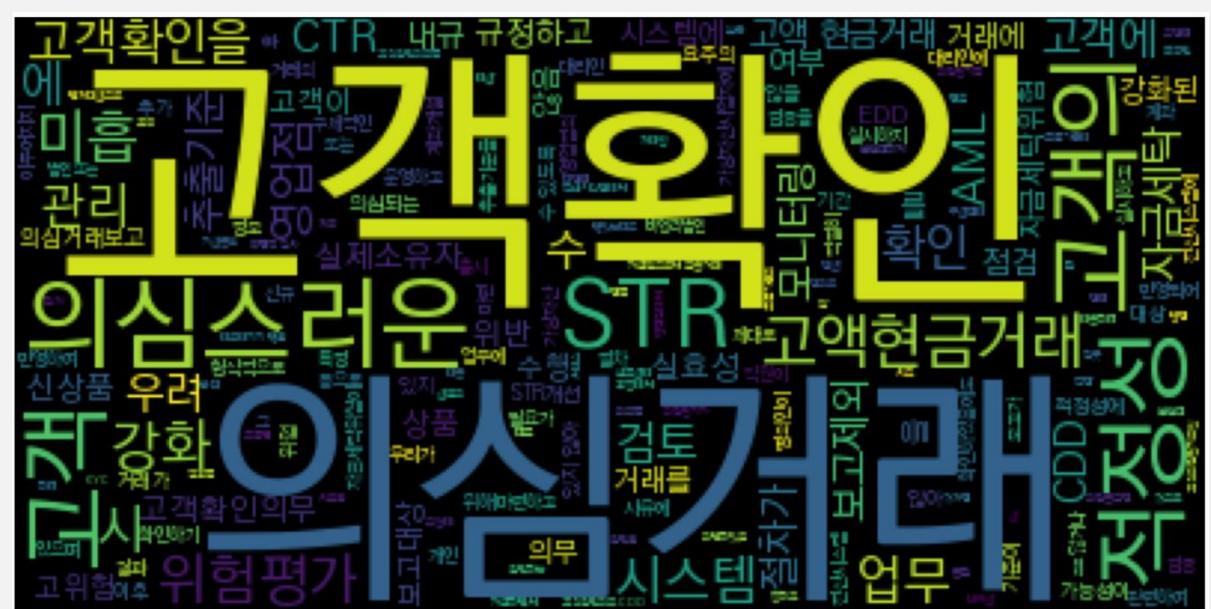
적발 시나리오의 유효성 의문, 경보 미발생 시나리오, 의심거래 사유의 형식적 기재, 검토 지연으로 인한 보고 지연...

고액현금거래 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CTR 보고 지연, CTR 보고 누락, 기계적인 보고제외 검토 처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Internal Control / Risk Management

위험평가 모형의 불합리성, 신상품 위험평가 체계 관리 미흡, 일선 영업점 내부통제 진단 불합리, 내규와 업무 절차의 불합치...



주요 발견 Key word (2020 ~ 2024. 06 현재)

고객확인, 신상품, 위험평가, 의심거래 추출기준, 점검 사유, 정보 관리, 내규 불합치, 보고 지연, 영업점 점검, 대리인

2. 최근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규제 위반 제재 사례

Toronto-Dominion Bank

- 2023년 Compliance 운영에 대한 검사 이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미흡으로 캐나다 본국 및 미국 양국으로부터 AML 운영 미흡으로 제재
- 제재 규모 - 캐나다 : 9.2백만 캐나다 달러 / 미국 : 4.5억 USD (최대 40억달러 추정)

Binance

-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미흡으로 제재
- 제재 규모 - 캐나다 : 4.4백만 캐나다 달러 / 인도 : 2.25 백만 USD / 미국 : 45.85억 USD 및 미국 사업 폐쇄 (7개 주 송금 인가 취소)

Alpha Capital

- 고객신원 확인, 실제소유자 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미흡으로 포르투갈 당국으로부터 제재
- 제재 규모 - 포르투갈 : 10만 유로

N26 Bank

- 독일 내 온라인은행인 N26에 대하여 2022년도에 발생한 의심거래 보고 지연에 대하여 제재
- 제재 규모 - 독일: 9.2백만 유로

Deutsche Bank

- 2023년 거래 모니터링 운영 체계 개선 명령 (2023.11.21)
- 현재까지 별도 제재는 없으나, 개선 명령 지연, 불이행 발생 시 벌금 부과 예정 (BaFin)

Bank Au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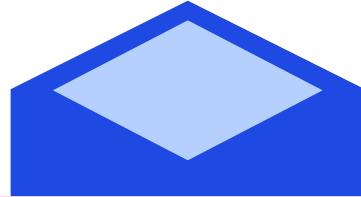
- 정치적 주요 인물과의 중요 거래 등 고위험군 고객과의 거래 정보 제공 미이행 등으로 제재
- 제재 규모 : 390만 CHF 범죄수익 몰수 및 1900만 CHF 벌금 부과. 정치적 주요 인물 신규 업무 취급 제한

Commerzbank

- 고객확인정보 갱신 미흡 및 보안조치 미적용
- 제재 규모 : 1.45백만 유로 벌금 부과

3. 글로벌 /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위반 발생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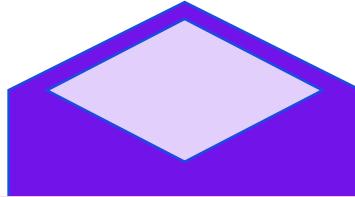
- 신원확인 및 검증 완전성 부족
- 내규와 업무 절차 불일치
- 부정확한 정보와 형식적 운영



고객 / 거래 증가로 인한 업무 부하 증가 + 10년 전과 다르지 않은 업무 방식과 운영 환경 =
잠재된 리스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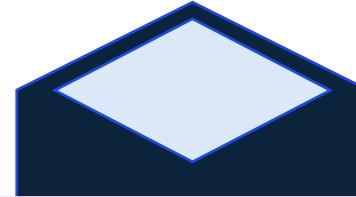
고객확인의무

- 신상품 / 채널 등에 대한 형식적 위험평가 운영
-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된 대응 미흡
- 형식적 운영 점검 활동



내부통제 / 위험관리

-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모니터링 시나리오
- 거래 실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니터링 점검 활동
- 형식적인 보고 제외 검토 처리



STR / CTR

[참고] 글로벌 규제 기관의 문제 인식

》 주요 금융기관 지적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

1. 지배구조 및 경영진의 통제 운영 환경 조성

업무에 대한 Ownership 미부여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부여가 불명확하고, 경영진의 지침과 업무 지시가 부재하거나 발견 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의 치유보다는 기일 준수에 초점을 맞춘 관리 행태

美內 지점 및 현지법인을 보유한 Asia계 은행의 Compliance 부문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 중국계 A은행 NY지점 : 지점 총 임직원 30% 이상
- 중국계 B은행 NY지점 : 지점 총 임직원 25% 이상
- 중국계 C은행 NY지점 : 지점 총 임직원 21% 이상
- 대만계 D은행 NY지점 : 지점 총 임직원의 29% 이상
- 대만계 E은행 NY지점 : 지점 총 임직원의 18% 이상

2. 자원의 부족

반복되는 높은 수준의 조직 이탈율과 내부 전문가 양성보다는 외부 제3자 또는 컨설팅 Firm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장기적인 Compliance Program 운영 자원 확보 소홀

3. 수직적 조직 구조로 인한 통제 권한의 제약

수직적 조직 구조로 인해 순발력 있는 의사 결정과 유관 발생 사항의 전파를 저해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배석한 경영협의회 등의 의사결정 대기로 인해 의사 결정 필요 사항의 지연 발생

4. 발견 사항에만 집중된 개선 활동

발견 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의 이해와 해당 근본 원인의 재발방지를 위한 전행 차원 전략 의사결정이 배제된 채 발견 사항에 한정된 개선 대응 및 임시 조치로 일관

5. 전행 차원의 상호 협력 부재

업무에 대한 Ownership 부여, 역할과 책임 부여 과정에서 개인 및 개별 부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행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

타 지역 은행의 美內 지점 및 현지법인과 달리 아시아계 은행의 이러한 경우가 두드러져 US 규제 기관의 주요 관심 Point로 관리

4. 규제기관의 감독 방향성

》 제재 실적을 기반으로

STR / CTR 보고 유관 보고 지연, 제외 사유 등록 등 既 주요 이슈 사항
관련

검사 감독 방향은 유지

위험관리 체계 운영실태 등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점검 활동 증가로
리스크 수준 식별 / 평가 방식 점검 증가

계정계 등 연계 시스템 변경 사항으로 인한 오류 증가로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안정성 우려 증가

형식적 절차 이행 등 적발 사례 증가로
영업점 점검, KYC 이행 등 형식적 운영 경계

5. Key Questions



준법감시인 및 전담조직의 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진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내부통제 위원회 등을 통한 보고 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우선순위가 밀리지는 않습니까?

현업 부서의 업무 부담에 따른 반발을 우려하여 업무 설계 시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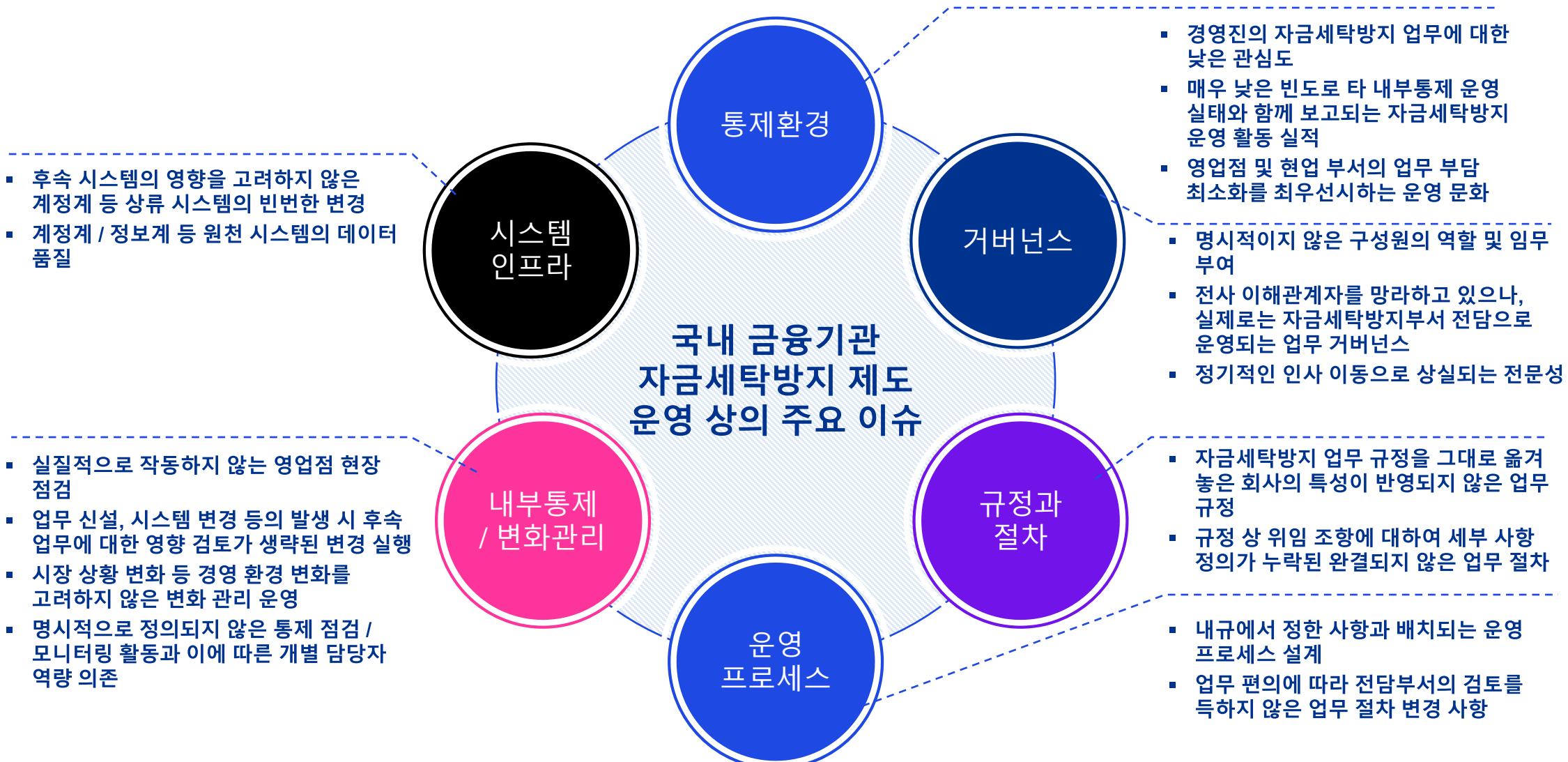
구성원 개인의 업무 역할과 책임이 명시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회사는 업무 규정이나 협회의 자율준수 규정, 표준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와 시스템 변경 시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가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하고 있습니까?

영업점의 현장 임점 점검 시 점검 사항은 점검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이슈의 원인



7. 자금세탁방지 및 Sanctions 대응 프로그램



8. Sanctions Compliance Program

Sanctions Program 관리	제재 대상 고객 식별	제재 대상 거래 탐지	자산의 동결 및 거절, 후속조치	내·외부 보고체계
<p>어떤 Sanctions을 준수해야 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EU,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US OFAC 등 Sanctions 위험 노출 수준을 고려한 관리 대상 프로그램 지정 활동 수행• 관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대상 국가, 개인 및 단체 유형과 금지대상 거래 행위 식별	<p>우리 고객은 제재 대상자에 해당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 대상 프로그램이 지정한 국가, 개인 및 단체 데이터의 확보• 고객 데이터와의 대사를 위한 알고리즘 설정• 고객 데이터와의 대사 실행 후 동일인 여부 확인 절차 운영	<p>어떤 거래가 제제 조치에 해당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 대상 프로그램이 정한 금지 대상 유형 거래의 반영• 탐지 방어를 위한 의심거래 징후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체크리스트 기반 거래 위험 측정• 고위험 대상 거래에 대한 심층 조사 절차 운영• 심층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 거래 여부 심의• 자금세탁방지 거래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Sanctions 위반 의심 거래 탐지 모니터링 운영	<p>대상 거래(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당국 앞 거래 허가 신청 절차 도입• 제재 대상 거래(자)에 대한 거래 실행 차단 체계 및 자산 동결 체계 운영	<p>경영진과 규제 당국에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사 이해관계자에 대한 Sanctions Compliance Program 정책 및 절차 전파• 당사 Sanctions 발생 상황에 대한 적시 / 정기적 업무 보고 활동 실시• 규제당국 앞 신고 절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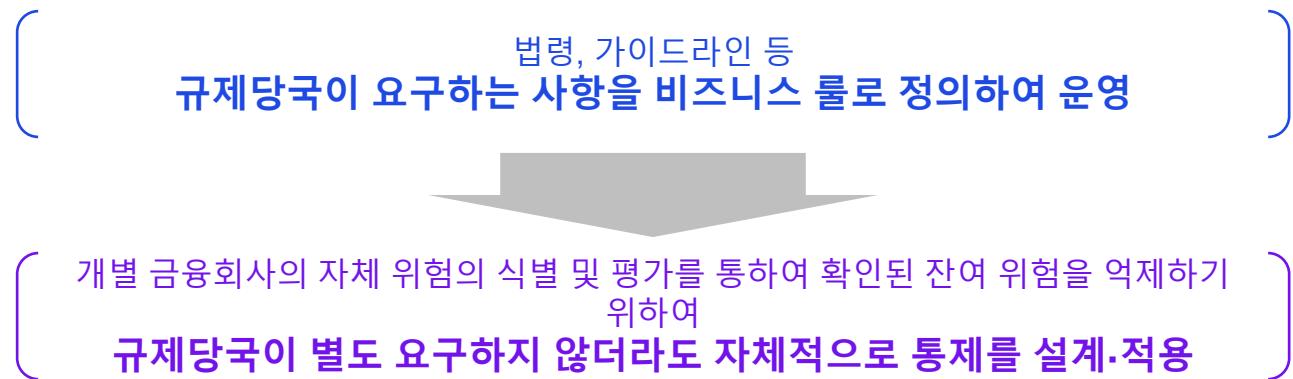
9. AML/ Sanctions Global Practice Model

이사회, 고위경영진 및 통합 위원회					
보고책임자 / Sanctions Officer					
규정, 절차 및 지침	위험평가 및 방법론	준법점검활동	AML/ Sanctions 교육 및 연수체계		
1차 방어선					
절차 및 통제활동	고객 신원확인 및 검증 / KYC 업무절차		AML/ Sanctions List 대사 체계 운영	거래 모니터링 체계 운영	
	고객확인의무	강화된 고객확인			
고객 위험평가	추가 정보 요구 대응		대사 일치 대상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	의심 활동에 대한 상위 보고	
	필요 시 고객확인 재이행 및 정기적 재수행 절차				
2차 방어선					
정기적 KYC 재이행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Sanctions 대사 운영		위험선호수준 결정	의심거래보고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운영 실태 점검			
특정 고위험군 승인	상위 보고 및 조사		전행 위험평가	교육 및 연수 운영	
	내·외부 보고체계 운영				
3차 방어선					
AML / Sanctions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 감사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독립적 점검		위험평가 / 시나리오에 대한 독립적 점검	

10.1 글로벌 Practice로의 First Step

》 위험기반접근법, Risk Assessment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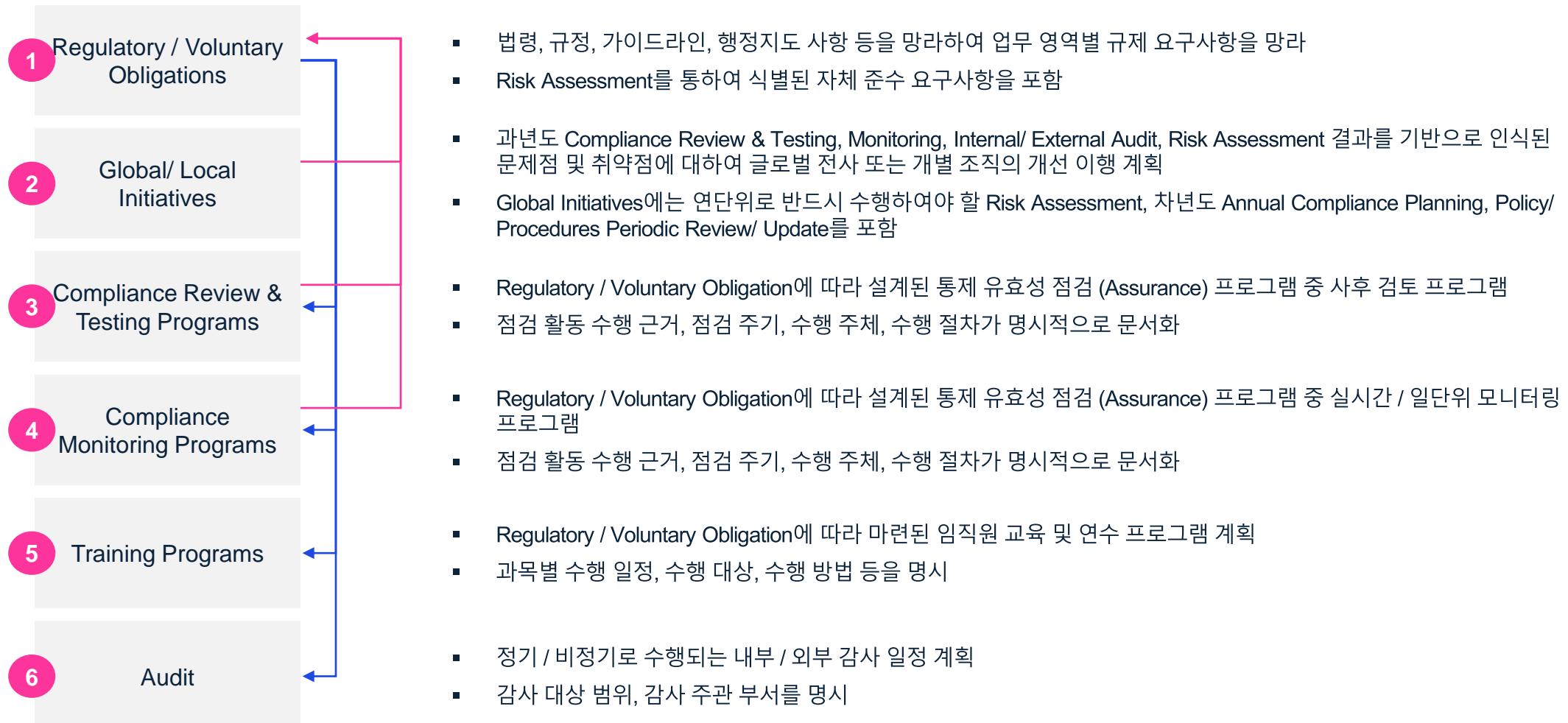
- FATF 40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1 = “Risk Based Approach”
- Risk Based Approach = 규제 기반 비즈니스 룰로부터의 확장



- 노출 잔여 위험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전사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면 Global Initiatives
- 노출 잔여 위험의 범위가 특정 국가 또는 조직 단위에 한정되어 개별적 대응으로 충분하다면 Local Initiative

10.2 글로벌 Practice로의 First Step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간 Compliance 운영 체계



Questions?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ome or all of the services described herein may not be permissible for KPMG audit clients and their affiliates or related entities.



kpmg.com/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Document Classification: KPMG Public